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뉴미디어홍보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공항건설팀 및 디지털도로팀) 및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보임규정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철도경찰사무관”을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9 중 시설서기보 “38”을 “39”로, 공업서기보 “20”을 “22”로, 토목운영서기보 “12”를 “11”로, 기계운영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9의2 중 시설서기보 “38”을 “39”로, 공업서기보 “20”을 “22”로, 토목운영서기보 “12”를 “11”로, 기계운영서기보 “29”를 “27”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7월 2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5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5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철도경찰대) ① (생 략)	제46조(철도경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철도경찰대에 운영지원과 · 기획과 및 수사과를 두며, 각 과 장은 <u>철도경찰사무관</u> 으로 보한 다.	② ----- ----- --- <u>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u>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서기보			<u>38</u>		<u>39</u>	+1
	.		.		.	
	.		.		.	
공업서기보			<u>20</u>		<u>22</u>	+2
	.		.		.	
	.		.		.	
토목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기계운영서기보			<u>29</u>		<u>27</u>	-2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서기보			<u>38</u>		<u>39</u>	+1
		•		•	•	
		•		•	•	
공업서기보			<u>20</u>		<u>22</u>	+2
		•		•	•	
		•		•	•	
토목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기계운영서기보			<u>29</u>		<u>27</u>	-2
		•		•	•	
		•		•	•	